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2043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2-05-2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8-21	

[돈카츠식탁]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식회사 티티코퍼레이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티티코퍼레이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95(운영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02-818-857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0504-070-395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영업팀 TEL: 010-3024-395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돈카츠식탁』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티티코퍼레이션	돈카츠식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95(운영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 11. 12	2021. 11. 26	김해든솔	02-818-8575	0504-070-3955
	법인등록번호	110111-8090005	사업자등록번호	167-86-0226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김해든솔	돈카츠식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95(운영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해든솔	02-818-8575	0504-070-395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김해빛찬	돈카츠식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95(운영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해든솔	02-818-8575	0504-070-395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박노태	돈카츠식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95(운영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해든솔	02-818-8575	0504-070-395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정희선	돈카츠식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95(운영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해든솔	02-818-8575	0504-070-395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돈카츠식탁]	/
상 호	[돈카츠식탁] ()점	/
상표(서비스표)	-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돈카츠식탁 브랜드 소개

돈카츠식탁은 어려운 사회 경기 속에도 변치 않는 저렴한 가격과 풍성한 양으로 따뜻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돈카츠 전문점>입니다. 돈카츠가 주 메뉴이고 이 외에도 트렌디하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7,029	7,740	-710	0	-5,710	-5,710
2022	655,176	826,138	-170,962	479,118	-215,557	-215,251
2023	353,865	449,038	-95,173	1,029,704	69,317	75,788

* 별첨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현 임원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각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성 명	현 직 위	사 업 경 력		
			사업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해든솔	대표	2020.04.~현재	돈카츠식탁 광명하안점 팀장	매장관리 및 메뉴개발
	김해빛찬	이사	2020.04.~현재	돈카츠식탁 광명하안점 대표	업무 총괄
	정희선	이사	2020.03.~현재	돈카츠식탁 가산점 팀장	매장관리
	박노태	이사	2020.03.~현재	돈카츠식탁 가산점 대표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3.12.31.	4	0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해당없음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 귀하가 당사의 [돈카츠식탁]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출원인	등록만료일 (사용허용기간)
	43류 /	출원일자 :	출원번호 :	김해빛찬	-

	가맹점 영업표지로 사용	2020.12.18.	40-2020-0233064		
		거절결정(일반)(2022.12.06)			

※ 당사는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당사의 [돈카츠식탁]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2년 04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0. 3. 16)

2. 돈카츠식탁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돈카츠식탁은 가맹사업 시작일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의 변경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식회사 티티코퍼레이션	돈카츠식탁	김해든 솔	2022.04.01.~2022.09.20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하우스디 더 스카이벨리 518호
주식회사 티티코퍼레이션	돈카츠식탁	김해든 솔	2022.09.21.~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95(운영동)

3. [돈카츠식탁] 업종

영업표지	업종	
돈카츠식탁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기타외식(돈가스)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	2	9	6	3	8	8	0
서울	2	-	2	7	4	3	6	6	0
부산	-	-	-	0	0	0	0	0	0
대구	-	-	-	0	0	0	0	0	0
인천	-	-	-	0	0	0	1	1	0
광주	-	-	-	0	0	0	0	0	0
대전	-	-	-	0	0	0	0	0	0
울산	-	-	-	0	0	0	0	0	0
세종	-	-	-	0	0	0	0	0	0
경기	-	-	-	1	1	0	1	1	0
강원	-	-	-	0	0	0	0	0	0
충북	-	-	-	1	1	0	0	0	0
충남	-	-	-	0	0	0	0	0	0
전북	-	-	-	0	0	0	0	0	0

전남	-	-	-	0	0	0	0	0	0
경북	-	-	-	0	0	0	0	0	0
경남	-	-	-	0	0	0	0	0	0
제주	-	-	-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0	6	0	0	0	6
2023	6	4	0	2	0	8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당해 브랜드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8	218,308	22,391	312,000	36,435	62,388	7,799	* 4 곳 산정제 외
서울	6	209,811	23,312	312,000	36,435	62,388	7,799	* 3 곳 산정제 외
부산	0							
대구	0							
인천	1							* 5곳 미만 * 1 곳 산정제외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1							* 5곳 미만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0							

※ 가맹점 매출액은 POS상 매출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을 산정하였으며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 위 매출 기재 내역은 가맹점이 배달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배달 영업 매출까지 파악하여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가맹점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개	36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 당사는 가맹금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시행하므로 가맹금예치제도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가맹금예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독산역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02-2027-2855

※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계좌번호를 은행으로부터 부여 받는 경우	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 ②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신청서 은행에 팩스로 발송 → ③ 은행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안내 → ④ 전송 받은 계좌번호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예치	
매장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 ④ 가상계좌에 가맹금예치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④ 인터넷뱅킹 접속 → ⑤ 가상계좌에 가맹금 이체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원하여 당사가 (주)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내용은 귀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서울보증보험과 향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돈카츠식탁”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냉난방기 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99제곱미터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예치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자율선택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계약체결 후 즉시	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비는 소멸성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즉시	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 시	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는 소멸성
총계	7,700				

2)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 불가 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체결 후 즉시	없음	없음	선지급형태의 물류 발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	--	--	--	--	------------------------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금액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합 계	9,7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돈카츠식탁”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 VAT포함 / 66㎡(15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 가사유	비고
인테리어 (점포내장 공사)	자율선택	/	/	-시공 여부 자유이며, -개별 계약	-	-	배달전문점으로 인테리어 공사 불요함.
주방설비/ 주방집기	자율선택	9,100	607	-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 취소	입고 후	/
간판/사인	자율선택	1,100	/	- 계약시 100%	제작 전 계약 취소	제작 후	전면LED, 아크릴박스 등
초도물품	가맹본부	5,500	/	-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 취소	입고 후	/
합계		15,700	1,047				

- ▶ 기존 점포의 리모델링 공사는 당사와 협의하여 위의 표에 기재된 금액을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 ▶ 한편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점포의 여건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인테리어등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시공업체 자율선택 가능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를 받아야 하며 별도로 감리비 금330만원(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별도공사 표시 :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외부공사, 냉난방, 전기증설, 가스증설, 화장실, 테라스, 폴딩도어, 조형물, 외부닥트 등

▶ 간판공사는 인허가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돈카츠식탁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고,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채용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보건증 발급 가능한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보건증 발급 가능한 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220,000원 (부가세포함)	익월10일	/	후불 소멸성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발생 시 지급	/	교육 미 실행	교육 실행	/
판촉분담비	가맹본부	V.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참조	통지 후 2주 이내	판촉 활동 미 실시	판촉활동 실시	/
광고분담비	가맹본부			광고 활동 미 실시	광고활동 실시	/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가능/귀책 사유를 고려 / 자율적으로 신고업체 선정 시 감리 받아야 함
인테리어,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자율선택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지연이자	당사	연 15%	지 급 기 일 의 다 음 날 부 터 지급하는 날 까지	-	-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담금액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가맹계약서 제7조의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5조의 1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1) 잔여계약기간의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매뉴얼/자료 제공대가	1,1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물류보증금	-	-

2) 신규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물류보증금	-	-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5조)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돈카츠식탁 가맹사업과 관련된 간판, 휘장, 로고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원칙적으로 귀하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귀하의 물품으로부터 위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2) 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당사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4) 귀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5)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당사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6)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각종 운영매뉴얼, 규정집, 문서, 도면, 도서 등)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7)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돈카츠식탁]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돈카츠식탁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등심돈카츠(도시락)	당사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시 :구두 경고 2회 위반시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시 - 계약 해지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에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안심돈카츠(도시락)			
치즈돈카츠(도시락)			
생선카츠(도시락)			
왕새우카츠(도시락)			
볶음김치 카츠(도시락)			
모듬치킨(도시락)			
카츠덮밥			
가라아게 덮밥			
새우덮밥			
김치나베			
어묵우동			
김치우동			
새우튀김 우동			
냉모밀			
가라아게			
새우튀김			
윙, 봉			
게맛살튀김			
치킨텐더			
콜라			
사이다			
웰치스(포도)			
환타(오렌지)			

-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돈카츠식탁] 시스템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시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2회 위반시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시 -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등심돈카츠(도시락)	9,000	별도 통보	
안심돈카츠(도시락)	10,000		
치즈돈카츠(도시락)	11,000		
생선카츠(도시락)	9,000		
왕새우카츠(도시락)	11,000		
볶음김치 카츠(도시락)	10,000		
모듬치킨(도시락)	10,000		
카츠덮밥	9,000		
가라아게 덮밥	9,000		
새우덮밥	10,000		
김치나베	10,000		
어묵우동	8,000		
김치우동	8,000		
새우튀김 우동	9,000		
냉모밀	8,000		
가라아게	8p : 5,000		
새우튀김	2p : 4,000		
왕, 봉	4p : 4,000		
게맛살튀김	5pc : 5,000		
치킨텐더	4pc : 4,000		
콜라	2,000		
사이다	2,000		
웰치스(포도)	2,000		
환타(오렌지)	2,000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돈카츠식탁”이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 등 영업형태가 동일한 돈가스 전문 업종	가맹본부	계열회사
	돈카츠식탁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점포직선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돈카츠식탁]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돈카츠식탁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8조
◆ 가맹계약의 갱신 당시에 물품공급 중단사유 어느 하나에 귀하가 해당하는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3조2항	28조 각호 및 34조 1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4조의1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11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정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 17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18조1,2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 19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 및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22조1~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2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 23 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 24 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25조4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27조3항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9조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 30 조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31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부담을 정	제32조	

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33조 2,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33조 7항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8조 1항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28조 22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34조 1항 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3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4조 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분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의 경우 종전 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14조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제34조 2항 각호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4)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90일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서 제7조 제5항).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을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직계가족을 포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돈카츠식탁이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 등 영업형태가 동일한 돈가스 전문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돈카츠식탁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상권에 따라 당사와 협의	월 22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당사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2명 이상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배우자, 직계가족 등 대체 근무 가능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상품 보관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보관상태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메뉴 조리 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조리상태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표준 레시피 준수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준수상태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매장 청결관리 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의무사용 품목 사용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상태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수시	당사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2주일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을”은 통지수령일 2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①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해 제시	전국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②서비스/상품광고				
	③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①+②+③의 경우	75%	25%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해 제시	
지역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 시행→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상동	상동	
--	---------	---------------	----	----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물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을 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유통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2년간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의 비밀유지 의무(18조), 경영금지 의무(19조)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써 금 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 가맹계약서 제34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써 계약기간 잔여 월수에 금 오십만원(₩500,000)을 곱한 금액과 금 삼천만원(₩30,000,000원)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3)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해지 및 폐업 처리하거나 돈카츠식탁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써 계약기간 잔여 월수에 일금 오십만원(₩500,000)을 곱한 금액과 일시불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귀하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위약벌로써 계약 종료 익일부터 당사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중단일까지 1일당 금오십만원(₩500,000)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5) 귀하는 당사가 가맹계약서 제9조 2항 및 제17조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 지불한 금액의 2배를 당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본 계약으로 인하여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위약벌 등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지연이자 연 15%로 합니다.
- (8)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설 매장의 경우는 약 50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48	13~15페이지 참조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전화상담 및 본사 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D-47~46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등	필요시 실시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30	
점포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실내공사 하는 경우)	D-29~27(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정 (실내공사 하는 경우)	D-26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실내공사 하는 경우)	D-25~55(21일)	
교육	- 기본 교육	D-7일	
설비 및 물품 공급	- 물품 등 공급	D-5~3(2일)	
영업시작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상기일정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점포별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하는 실비 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귀하 등 가맹점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화에 의한 해결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가맹점 부담(가 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 도 비용을 초과 한 부분에 한 함)	문의 : 당사

		설 명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돈카츠식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 종류		주요내용	교육생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최초 교육	메뉴	레시피교육	가맹점주	이론/실습	계약 후 개점 후 3일 까지	필수 교육
	가맹점운영	운영교육	가맹점주/관리자	이론		
정기교육	운영교육	서비스향상 /매출증대	가맹점주/관리자	이론/실습	교육14일 전 통지	
수시교육	특별교육	영업방침 /신메뉴	가맹점주/관리자	이론/실습	교육7일 전 통지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메뉴 가맹점 운영	6시간X7일 = 84시간	최초 가맹금에 포함(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		4시간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필수교육 계약 연도 제외
수시 교육		4시간	조리인원 교체 및 본사 신메뉴 교육 등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필요시 실시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관리종업원이 교육을 불완전 이수하거나 적합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교육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 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입니다.
- * 귀하는 조리인원 교체 시 당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소정 교육(조리교육 ,5일) 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교육비용(총 교육일 중 2일은 가맹본부가 부담, 3일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관리종업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2023년 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2023년 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개설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